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27호) 등 28건
- 지역당(지구당) 설치근거 마련 및 정당등록 취소요건 정비

2026. 3.

정 치 개 혁 특 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III. 총괄 검토의견	39
1. 지구당 제도 연혁	39
2. 지구당 폐지 배경	40
3. 지구당(지역당) 부활 논의 및 관련 쟁점	43
IV. 개별 검토의견	46
1. 개정안별 주요 사항 검토	46
2. 지역당 도입 및 현행 시·도당 존치 등	49
3. 지역당 발기인 및 법정지역당수·법정당원수	53
4.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56
5. 당원협의회의 설치단위	59
6-1. 기타: 당원의 정의, 권리 및 의무	63
6-2. 기타: 당헌의 기재사항, 지자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66
6-3. 기타: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69
6-4. 기타: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	72

7. 지역당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7
7-1. 후원회 지정권자 및 후원금 지정기부	77
7-2.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	81
7-3.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배분	84
8. 지역당 도입 시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참고1] 개정안 조문대비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참고2] 개정안 조문대비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참고3] 개정안 조문대비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I. 제안경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영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윤상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3. 남인순의원안

가.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4. 장경태의원안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5. 김윤덕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6. 임미애의원안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7. 25.

다. 회 부 일 : 2024. 7. 26.

7. 이해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8. 6.

다. 회 부 일 : 2024. 8. 7.

8. 고동진의원안

가.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9. 이언주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7.

다. 회 부 일 : 2024. 11. 8.

10. 윤건영의원안1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11. 조은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9.

다. 회 부 일 : 2025. 3. 20.

12. 민형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13. 윤건영의원안2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14. 이성윤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7.

다. 회 부 일 : 2026. 1.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김영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16. 윤상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17. 남인순의원안

가.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18. 장경태의원안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19. 임미애의원안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7. 25.

다. 회 부 일 : 2024. 7. 26.

20. 고동진의원안

가.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21. 이해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7.

다. 회 부 일 : 2024. 11. 28.

22. 민형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23. 문정복의원안

가.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7.

다. 회 부 일 : 2026. 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김영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5. 남인순의원안

가.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26. 임미애의원안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7. 25.

다. 회 부 일 : 2024. 7. 26.

27. 민형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28. 문정복의원안

가.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7.

다. 회 부 일 : 2026. 1.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영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윤상현의원안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

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지역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남인순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

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장경태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

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김윤덕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및 제22조의2 신설).
- 나.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라.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마.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도당 및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사. 지역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자. 정책연구소에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6. 임미애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

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안 제3조).
-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 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 라.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이해식의원안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규제가 고도화되었고 시민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 정당에 대한 폭발적인 시민참여로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수준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기능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중앙당의 수도

소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법정시·도당수를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라.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바.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사. 정당등록 취소 사유 중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완화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8. 고동진의원안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

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4항 신설).

마.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 규정은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아.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외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179호) 및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9. 이언주의원안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다.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1개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라.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 마.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바. 지구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 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 아.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10. 윤건영의원안1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11. 조은희의원안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

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12. 민형배의원안

제안이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했습니다. 입당·탈당 등 당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연결하는 정당 구성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지구당 유지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 2004년 폐지됩니다.

지구당 폐지로 지역에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고 정당 활동이 위축되자 2005년 「정당법」을 개정합니다.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편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관으로 당원 관리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과 맞지 않는 현재 정당의 중앙집중적인 정치적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정당활동 활성화 및 지역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지역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25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마.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명 이내로 하고,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각 3명 이내로 함(안 제30조제1항).
- 바. 지역당 대표자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당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사. 지역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당원협의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3. 윤건영의원안2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14. 이성훈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김영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6. 윤상현의원안

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

- 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7. 남인순의원안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8. 장경태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9. 임미애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 고동진의원안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마.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8호) 및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1. 이해식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안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 민형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3. 문정복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김영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5. 남인순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6. 임미애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7. 민형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8. 문정복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총괄 검토의견

1. 지구당 제도 연혁¹⁾

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월 31일 최초로 제정된 「정당법」에 의하여 만들어짐. 당시 「정당법」이 존재했던 국가는 독일과 아르헨티나뿐이었으므로, 독일을 주요한 비교 사례로 삼아 정당법이 제정되었음.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던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당시 지구당 제도는 여러모로 제3공화국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음.²⁾

제정 당시 「정당법」 규정은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3분의 1 이상, 약 44개의 지구당을 가져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제정 「정당법」 제25조), 각 지구당은 50인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므로(제정 「정당법」 제27조) 최소 2,2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했음. 강력한 집권여당이거나 기득권에 기반을 둔 유력 야당이 아니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결국, 지구당 제도는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정당의 난

1) 이하의 내용은 주로 아래 논문 참고

조한상,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2018)

2) 조한상,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2018) p.82.,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5.

립을 막기 위해서, 즉 신진 정치세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음.

2. 지구당 폐지 배경³⁾

40여 년간 운영되어온 지구당이 폐지되게 된 배경은 조직으로서 지구당이 중앙의 정치와 유권자를 연계하는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주로 정치인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수단, 특히 선거동원의 기제로 이용되었기 때문임.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음. 지구당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고문, 사무국장, 부장, 동책, 통책, 반책까지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었음.

지구당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와 상근직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지역주민 경조사비, 행사비, 당원 및 조직관리비 등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였음.⁴⁾

지구당 운영비를 조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에게 있었고, 국가의 지원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지구당위원장은 지

3) 이하의 내용은 주로 아래 논문 참고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4)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수도권외의 경우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 지방의 경우에도 월 3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었음.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6.

구당 운영비 마련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취약해졌고, 지구당 운영경비의 조달을 지구당위원장에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음.

특히, 선거철에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지구당으로 공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음. 대선이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이 적발되었고, 그때마다 지구당 조직은 정치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으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음.⁵⁾

이에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⁶⁾을 통해 지구당 조직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당시 개정의 핵심내용은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임. 이에 따라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지구당에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바뀌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담당하던 역할, 즉 정당의 창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당원명부의 관리, 정당의 해산 등과 관련된 역할을 시·도당이 맡게 되었음.

그 밖에 개정 「정당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당의 경량화”임. 과거 중앙당의 경우 유급사무원을 15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 「정당법」은 유급사무원을 100인 이내로 두도록 줄였는데

5) 세계일보(2024.6.2.), “차떼기 악몽 vs 원외도 숨 좀 쉬자, 지구당 논쟁”
SBS(2024.5.30.), “지구당 부활? 돈 먹는 하마 우려...정개특위 만들자”
이데일리(2015.6.4.), “돈 먹는 하마, 지구당 제도 부활하나”

6) 2004년 4월에 실시될 제17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원내정당들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정치개혁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앞다투어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에 지구당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임.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79

이는 정당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임. 구·시·군의 당 연락소 유급사무직원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2004년 「정당법」 개정내용 비교]

구 분	기존의 정당법 (2002.3.7. 개정)	2004년 개정 정당법 (2004.3.12. 개정)
정당의 구성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으로 구성한다
입당·탈당	제20조·제23조 지구당 에 제출	제23조·제25조 시·도당 에 제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의2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에는 150인 이내, 당지부에는 5인 이내, 지구당 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30조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에는 100인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 에는 총 100인 이내 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자료: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제2호(2009), p.180 내용 일부 수정

3. 지구당(지역당) 부활 논의 및 관련 쟁점⁷⁾

지구당이 수행해왔던 지역 기반 정당활동의 기능을 시·도당으로 이관하였지만, 시·도당은 통상 10명 내외의 사무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구 관리, 당원 교육 및 지역 여론 수렴 등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조적·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임의조직으로서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 읍·면·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나, 법적 하부조직이 아닌 임의조직으로 규정되어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 시·도당 승인 없이는 자체 교육이나 행사도 제한되는 등 활동 범위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며, 당원 관리, 정치교육, 지역 현안 파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원협의회에 독자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당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또한 사무소 설치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7) 이하의 내용은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참고

입법조사처,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2024.8.1.

역주민 및 당원과의 접촉과 민원 처리를 위해 연구소·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사무공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활동 여건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설치단위와 정당조직 체계 개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간 정치활동의 형평성과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당 설치로 인한 사당화 가능성 및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당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제기된 바 있음.

[제21대국회 지역당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구 분	논의사항
도입 찬성	- 원내외 당협위원장 사이의 정치활동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당원협의회는 현행법상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으나, 많은 지역에서 편법으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 3당 원외 당협위원장은 지역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 입장문 제출 (당원 수가 늘어난 만큼 당원의 지역활동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고, 과거 문제가 되었던 회계 투명성 등은 현재 개선되어 지역당 부활 필요) - 지방자치시대·분권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위해 지역당 필요 * 지역당 부재로 인해 당원 관리가 중앙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예속된 측면 -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고비용 정당구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는 개선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의식 또한 성숙해진 상황 *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등 선거환경과 풍토가 변화하여 과거 문제되었던 금권선거나 과도한 선거비용소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도입 반대	- 지역당 설치시 정치인 개인의 자금력이나 중앙당의 자금지원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정치가 개인 또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 존재 -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 존재 -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당이 그의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하여는 의문 존재 * 현행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대안 제시
-------------------------	---

※ 자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제1차(2022.11.24.) 회의록 내용 요약

한편, 과거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고비용 구조와 정치자금 부패 문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지구당 운영 재원의 마련 방식과 회계 투명성 확보 역시 핵심 쟁점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후원회 설치, 국고보조금 또는 당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기부·모금 한도 설정, 회계 처리 및 공개 의무 등 엄격한 통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IV. 개별 검토의견

1. 개정안별 주요 사항 검토

개정안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지역당’, ‘지구당’, ‘지역자치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등의 명칭으로 부활시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조은회의원안의 경우에는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대신 당원협의회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개정안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과는 논의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음.

개정안은 설치단위를 지구당 폐지 이전과 같이 국회의원지역구로 설정하고, 정당조직 체계에 있어서도 중앙당과 시·도당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당을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윤상현·남인순·장경태·김윤덕·이해식·고동진·이성윤의원안은 지역당과 당원협의회의 설치 단위를 달리하여 당원협의회를 존치시키는 반면, 민형배·윤건영·임미애·이언주의원안은 지역당 설치로 기존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있음.

법정 지역당 수에 관하여는 김영배·남인순·장경태·이해식·윤건영·임미애·이성윤의원안은 별도의 개소 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윤상현·김윤덕·고동진·민형배·이언주의원안은 최소 25개소에서 최대 30개소까지 개소 수를 제한하고 있음.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와 관련하여서

는 김영배·장경태·이성윤의원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윤상현·남인순·김윤덕·이해식·고동진·민형배·윤건영·임미애·이언주의
원안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당 폐지
이전 정당법에서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를 30명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을 고려할 때, 이에 준하여 요건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대부
분의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를 위한 발기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구당
폐지 이전에도 지구당의 경우 10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음.

마지막으로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와 관련하여, 윤건영의원안은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김영배·이언주의원안은 1명, 윤상
현·남인순·장경태·고동진·임미애·이성윤의원안은 2명, 민형배의원안은
3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김윤덕·이해식의원안은 자율적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구당 폐지의 배경으로 비용 낭비 문제가 제
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개정안에서 유급사무직원 수의 적정 범위
를 달리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지구당 폐지 이전에는 유급사
무직원 수를 2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구 분	지구당 폐지전	현행	김영배 의원안	윤상현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김윤덕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윤건영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이성윤 의원안	조은희 의원안	
명칭	지구당	-	지역당										지구당		지역 자치당	지역당 대신 당원 협의회 사무소 허용
설치단위	지역구	-	지역구													
정당구성 (시도당존치)	중앙당	중앙당	중앙당													
	지구당	시도당	시도당													
	-	지역당										지구당		지역 자치당		
당원 협의회		지역구, 구시군, 읍면동	존치 (읍면동)	존치 (지역당 미설치 지역구 구시군)	존치 (읍면동)		존치 (지역당 미설치 지역구 구시군)	존치 (읍면동)	존치 (지역구 또는 구시군)	폐지			존치 (읍면동)			
법정 지역당수	지역구 1/10	-	없음	30개	없음		30개	없음	30개	25개	없음		30개	없음		
지역당 법정당원수	30명	-	없음	100명		없음	100명	50명	100명	50명	50명	100명		없음		
지역당 유급사무 직원수	2명	-	1명	2명			자율		2명	3명	없음	2명	1명	2명		

2. 지역당 도입 및 현행 시·도당 존치 등

개정안은 모두 정당의 구성요소로 현행 중앙당(수도 소재)과 시·도당(특별시·광역시·도 소재)을 존치하면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구 분	지구당 폐지전	현행	김영배·윤상현·남인순· 장경태·김윤덕·이해식· 고동진·민형배·윤건영의원안	임미애·이언주 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명칭 (설치단위)	지구당 (지역구)		지역당	지구당	지역자치당
			(지역구로 동일)		
정당구성	중앙당		중앙당		
	지구당	시도당	시도당(존치)		
			지역당	지구당	지역자치당

명칭과 관련하여 김영배·윤상현·남인순·장경태·김윤덕·이해식·고동진·민형배·윤건영의원안은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임미애·이언주 의원안은 ‘지구당’, 이성윤의원안은 ‘지역자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두고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당을 설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 다만 이해식의원안은 현행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이에 기초 단위 정당 조직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예측가능성 또는 기능적 통일성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당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구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정치·행정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당의 소재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당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구당 폐지 이전에는 중앙당(수도 소재)과 지구당(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만을 정당의 법정 구성요소로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는 당지부를, 구·시·군에는 당연락소를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⁸⁾

한편 시·도당의 존치 여부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는바, 광역 단위의 정치·행정 수요를 고려할 경우 현행과 같이 시·도당을 법정 조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역당을 부활시키면서 정당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라면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세에 따른 광역 단위 정치·행정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이유로 시·도당을 법정 조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8) 「정당법」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400회 정치개혁특별소위 제1차(2022.11.24.) 회의록]

○김영배 위원 시.도당을 임의화했을 경우에 지금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시.도당은 법정 기구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현재 우리 선거제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갈수록 광역 단위별 소위 행정 수요나 정책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지방화 시대, 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나 부울경이나 기타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이나 아니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위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 중앙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향후 국가 전략상으로도 시.도당이 정치 주체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될 단위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적 정치.행정 수요가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록 p.7)

○심상정 위원 지구당 폐지하면서 시.도당이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지금 지역당을 부활하면 임의 조직화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광역 차원의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역 시.도지사도 다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책 단위로서 명확하게 정치 영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준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 p.11)

마지막으로 중앙당 소재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지역에 중앙당을 두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라 지역정당의 난립이나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바, 정당 난립 방지의 필요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지구당 폐지전	현행	이해식의원안
중앙당 수도소재	중앙당 수도소재 규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중앙당 수도소재 규정 삭제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당 설치단위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할 경우 선거구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될 수 있어 지역당 운영의 안정성이 낮고,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여러 개의 지역당을 설치 할 수 있어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3. 지역당 발기인 및 법정지역당수·법정당원수

개정안은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창당 시 지역당 발기인수와 법정 지역당수, 지역당 법정당원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지역당 발기인						
구 분	지구당 폐지 전	김영배·남인순·장경태· 김윤덕·이해식·윤건영 의원안	윤상현·고동진·이성윤 의원안	임미애·이언주·민형배 의원안		
지역당 발기인	10인 이상	2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법정지역당수 및 법정당원수						
구 분	지구당 폐지 전	김영배·장경태· 이성윤의원안	윤상현·김윤덕· 고동진·이언주 의원안	남인순·임미애 의원안	이해식·윤건영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법정 지역당수 (제17조)	국회의원지 역선거구총수 의 1/10 이상	없음	30개 이상	없음	없음	25개 이상
지역당 법정 당원수 (제18조)	30인 이상	없음	100명 이상		50명 이상	

현행법은 정당의 창당활동을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하도록 하면서,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지역당 발기인 요건과 관련하여, 지구당 폐지 전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였으나, 김영배·남인순·장경태·김윤덕·이해식·윤건영의원안은 20명 이상, 윤상현·고동진·이성윤의원안은 30명 이상, 임미애·이언주·민형배의원안은 5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9) 「정당법」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발기인 요건을 상향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어 적절한 발기인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법정 시·도당 수를 5개 이상,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를 1천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¹⁰⁾ 개정안 중에는 법정 지역당 수와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안과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안이 혼재되어 있음.

지구당 폐지 전에는 법정 지역당 수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역당의 당원 수는 최소 30명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김영배·장경태·이성윤의원안은 법정 지역당 수 및 당원 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윤상현·김윤덕·고동진·이언주의원안은 지역당 개소 수를 30개 이상, 당원 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인순·임미애의원안은 법정 지역당 개소 수는 두지 않되 당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이해식·윤건영의원안은 개소 수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당원 수를 50명 이상으로, 민형배의원안은 25개소 이상과 50명 이상의 당원 수를 각각 요구하고 있음.

10)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발기인 요건과 함께 지역당의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당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정당설립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해식의원안은 현행 법정 시·도당 수 및 당원 수 요건을 각각 5개소 이상, 1천 명 이상에서 2개소 이상, 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시·도당 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측면이 기대되는 반면, 시·도당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지역당수와 법정 시·도당수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 정당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개정안은 지역당의 도입을 전제로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적게는 1명 이내에서 많게는 3명까지 규정하거나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 분	지구당 폐지 전	김영배·이언주 의원안	윤상현·남인순· 장경태·임미애· 고동진·이성윤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윤덕· 이해식 의원안
지역당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	2인 이내	1명 이내	2명 이내	3명 이내	자율
	(당지부 5인 이내 당연락소 2인 이내)	임의기구에는 유급사무직원 두지 않는 현행 규정 유지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의 경우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수를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한편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지구당별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 시 특별시·광역시·도에는 당지부를, 구·시·군에는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당지부에는 5인 이내, 당연락소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¹²⁾

1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12)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

개정안은 지역 단위 조직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와 관련하여, 김영배·이언주의원안은 1명 이내, 윤상현·남인순·장경태·임미애·고동진·이성윤의원안은 2명 이내, 민형배의원안은 3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김윤덕·이해식의원안은 이를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급사무직원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과거 지구당 폐지의 배경이 되었던 고비용 정당 구조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원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민형배의원안은 시·도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김윤덕·이해식의원안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이해식의원안은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원 1천 명당 유급사무직원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지역당 설치 및 그 유급직원 수의 설정과 더불어 정당 또는 시·도당 차원의 유급사무직원 확대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함께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黨憲으로 정하는 일정한 資格등을 갖춘 政策開發研究員은 그 數에서 제외한다), 당지부에는 5인 이내, 지구당에는 2인 이내로 하되,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단위가 지역당과 유사하므로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수와 지구당 폐지 전 유급사무직원수를 고려하여 2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5. 당원협회의 설치단위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도입하는 지역당을 전제로 현행 당원협회의 설치단위를 변경·폐지하거나 지역당 도입 대신 현행 당원협회의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조은희의원안)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김영배·남인순· 장경태·이해식· 이성윤의원안	윤상현·김윤덕 의원안	임미애·이 연주·민형 배·윤건영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지역당 전제 당원협회의 설치단위 (제37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읍·면·동별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 (명칭은 사무소)	당원 협회의 폐지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별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공식적인 정당의 지역조직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당이 지역주민들과 보다 가까워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¹³⁾

이에 2005년 「정당법」 재개정을 통하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정 조직이었던 이전의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회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의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¹⁴⁾

13) 정당 하부조직의 재정 및 재무구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제도적인 대안을 통해서 재정 및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조직과 자금의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으나, 지구당이라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것은 지나친 줄속처사라는 비판이 폐지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 줄곧 제기되었음. 한국정치학회, “생활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제도 개선안: 당원협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선거연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p.12.

14) 당원협회의의 명칭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마다 다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로, 국민의힘은

[2005년 「정당법」 재개정내용 비교]

구 분	2004년 개정 정당법 (2004.3.12. 개정)	2005년 개정 정당법 (2005.8.4. 개정)
활동의 자유	제30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 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 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 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 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로 당원협의회 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 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은 정당이 당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 단위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김영배·남인순·장경태·이해식·이성윤의원안은 지역당을 국회의원지역구에 두고 당원협의회는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능을 분리하고자 하며, 윤상현·김윤덕의원안은 지역당

당원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음.

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자치구·시·군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당과 당원협의회 간 관할 구역을 구분하고자 함.

또한, 고동진의원안은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임미애·이언주·민형배·윤건영의원안은 지역당 부활로 기능적 필요성이 감소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한편, 조은희의원안은 지역당 부활 여부와는 별개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에 한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지역 단위 정치·행정의 거점으로서 당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은 지역당 도입 여부에 따라 논의의 전제가 달라지는바,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된 당원협의회를 지역당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의 조직 운영으로 인한 이중적 부담은 없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설치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반면, 현행과 같이 지역당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전 지구당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당원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

여 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조은회의
원안과 같이 비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보다 정기적이고 공
신력 있는 지표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읍·면·동별 당원
협의회,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
구·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설치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입장임.

6-1. 기타: 당원의 정의, 권리 및 의무(김윤덕의원안 제2조, 제22조의2 등)

개정안은 ‘당원’을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해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김윤덕의원안
정의 (제2조)	정당의 정의만 규정	현 행 + <u>당원의 정의</u>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
당원의 권리·의무 (제22조의2)	<신 설>	① <u>당원은 당대표경선등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짐</u> ② <u>당원은 당헌·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가짐</u> ③ <u>당원은 의사에 반하여 당원 권리 제한받거나 의무지지 않음</u>

현행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연령 요건(16세 이상), 공무원이 아닐 것, 선거권을 가질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와 그 권리·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 오던 권리·의무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 당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 정당에서의 당원의 권리·의무 규정]

구 분	더불어민주당(당헌)	국민의힘(당헌)
당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계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	--	----------------

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헌

다만, 현행법상 당원의 자격, 입당 및 탈당 등과 관련하여 이미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운덕의원안 제22조의2제1항의 문언 중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당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및 활동을 위하여 당원의 정의, 권리·의무, 당원 권리의 제한과 의무부담 제한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의 경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2. 기타: 당헌의 기재사항, 지자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이해식·이언주 의원안 제28조, 제36조의3)

개정안은 당헌의 기재사항에 중앙당, 시·도당,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이해식의원안	이언주의원안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	<신 설>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36조의3)	<신 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당(지구당)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 대부 가능	
[개정안별 차이점]	정당 제한	해당 지방의회에 의석가진 정당 한정	정당 제한 없음
	공유재산 제한	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 한정	사무실 제한 없음

현행법상 정당은 당헌에 정당의 명칭,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당 당헌을 공개하여야 함.¹⁵⁾

15)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이에 이해식의원안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 또한 당헌에 기재하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유급사무직원수를 당헌에 명시함으로써 정당의 지출 구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공직선거를 앞둔 상황 등에서는 유급사무직원수의 조정 등을 통한 탄력적인 운영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해식의원안과 이연주의원안은 정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당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식의원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한정하고 대부 대상 공유재산도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이연주의원안은 대상 정당이나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정당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무상대부 대상의 제한 여부에 따라 정당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 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강령·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및 대부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규정의 현실성 및 시행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급사무직원수를 당헌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하여 지역당 운영의 고비용 구조 완화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의석 정당이 지방의회 청사 내 지역당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21년 5월 제출한 바 있다는 입장임.

6-3. 기타: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남인순·김윤덕·이해식의원안 제38조)

개정안은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책연구소에 별도로 분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남인순·이해식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제38조)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 의무 설치·운영	현 행 + 시도당은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가능	정책연구소에 분원 설치 가능

현행법상 보조금 배분대상정당¹⁶⁾은 정책의 개발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16)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당별 정책연구소 현황]

정당명	이사장	정책연구소	연구소장	법인등록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민주연구원	이재영	2008.09.04.
국민의힘	장동혁	여의도연구원	조승환	2004.11.26.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조국	2024.06.11.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연구원	김두수	2023.11.15.
진보당	김재연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2018.01.12.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2020.10.27.
사회민주당	천호선	불평등연구소	천호선	2024.11.21.
민주평화당	공석	혁신과미래연구원	오세문	2018.10.30.
	공석	민주평화연구원	공석	2018.03.15.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새미래연구원	김성주	2024.06.25.
우리공화당	조원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2018.12.11.
자유통일당	김종대	광화문연구원	공석	2024.12.24.
정의당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공석	2012.12.1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¹⁷⁾에 대하여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30%를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책연구소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대하거나 정당 조직 층위별 정책연구의 기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남인순·이해식의원안은 시·도당에도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김윤덕의원안은 정책연구소 자체의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17) 2025년도 4분기 기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역당 도입으로 정당 조직의 단계가 기존 중앙당 - 시·도당에서 중앙당 - 시·도당 - 지역당으로 심화되는바, 기존 중앙당만 보유하였던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시·도당까지 배분하거나 정책연구소 자체의 분원을 지방 단위로 설치하는 등 단계 심화에 따른 정책적 기능 분담의 필요성 또한 인정될 수 있으나, 정당의 전체적인 규모가 비대화될 우려가 있고 재정 여력에 따른 정당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거나 정책연구소 분원을 둘 경우 지역별 정책개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력에 따른 정당 간 격차 발생도 예상되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6-4. 기타: 정당 등록취소 요건 변경(이해식·윤건영의원안 제44조)

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중 공직선거 미참여 요건을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유효투표총수 2% 미만시 등록취소 규정’을 득표율 요건 완화를 통해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이해식의원안	윤건영의원안
등록의 취소 (제44조)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		
	1. 법정시·도당수, 시도당 법정당원수 요건 미구비	1. 지역당 추가로 자구수정	1. (현행과 같음)
	2. 최근 4년 임기만료 국회 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미참여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참여해 의석 못 얻고 유효 투표총수 2%이상 미득표 →(위헌무효)	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참 여해 의석 못 얻고 유효투 표총수 0.5%이상 미득표	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2회 연 속 참여해 의석 못 얻고 지역 구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 0.5% 이상 미득표

현행법은 정당등록의 취소사유로 법정시·도당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제1호), 최근 4년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제2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등록 취소사유(법 제44조)]

구 분	취소사유
제1호	법정시·도당수(제17조) 및 시·도당 법정당원수(제18조) 요건 구비 못한 때
제2호	최근 4년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 시·도의원선거 참여안한 때
제3호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참여해 의석 못 얻고 유효투표총수 2% 이상 득표 못한 때

그런데,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조항(제3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2헌마431등)]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

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정기간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당등록 취소조항은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정당등록을 취소하게 강제하였음.

그 결과,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할 경우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음.

이에 이해식의원안과 윤건영의원안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현행 등록취소 조문(제44조제1항제3호) 대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

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의 취소 요건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해식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제44조제1항제2호)도 정당 등록의 취소 요건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 등록취소 조문 대신 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 방법으로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를 갖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별 등록취소 요건이 상이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와 정당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등록취소 요건 설정할 필요가 있고,

윤건영의원안의 경우 득표율 요건(0.5% 이상)의 적용을 전체 득표율(지역구+비례)¹⁸⁾이 아닌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선거로 각각 적용(둘 중 하나만 미달하면 요건 충족)하고 있는데, 이는 신생·군소정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¹⁹⁾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체

18) 현행법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진 않음. 다만, 「정치자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 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를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의 산술평균으로 판단함.

19) 예를 들어, 전체 득표율은 0.6%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에선 0.8%, 비례대표선거에선 0.4%를 득표한 경우 전체 득표율 기준(0.6%)으로는 등록취소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미달하는

득표율을 적용하거나 지역구, 비례대표 두 선거 중 하나에서라도 득표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정당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또한 이해식의원안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제4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있는바, 정당의 주요 기능이 당원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 미참여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요건의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미참여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득표율(0.4%)이 미달되어 등록취소되게 됨. 특히,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득표율 미만으로 등록이 무조건 취소되게 되는 문제가 있음.

7. 지역당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안·윤상현의원안·남인순의원안·장경태의원안·임미애의원안·고동진의원안·이해식의원안·민형배의원안·문정복의원안)은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임.

7-1. 후원회 지정권자 및 후원금 지정기부

개정안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역당을 추가하거나,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이른바,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후원회 지정권자 (제6조)	중앙당 (중앙당창당준비위 포함)	김영배·남인순·장경태·이해식·문정복 의원안	현행 + 지역당
		윤상현·고동진 의원안	현행 + 지역당 (지역당창당준비위 포함)
후원금 지정기부 (제10조 또는 제11조)	<신 설>	김영배·장경태·임미애 의원안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 기부하는 경우 지역당 지정 기부가능 (중앙당은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해당 후원금 사용)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역당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당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정당의 법정 조직인 중앙당과 시·도당 중 시·도당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²⁰⁾ 지역당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당과의 차별적 규정 필요성 및 시·도당 또한 후원회를 허용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후원금의 역사는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당(중앙당)에만 정치후원금을 허용하였다가 점점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가 확대되어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모두 후원회를 허용하였음. 지구당 폐지 후에는 일시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만 후원회를 허용(부칙으로 2년 후 폐지 규정)하였고, 2006년에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도 폐지됨.

20)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²¹⁾을 내림에 따라 2017년 중앙당 후원회만 부활하여 현재까지 중앙당만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정당 후원회 지정권자 연혁]

구 분	정당 후원회 지정권자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후원회제도 최초 도입	중앙당
1989년 ~ 2004년 지구당 폐지 전	중앙당 + 시·도지부 + 지구당
2004년 지구당 폐지(2004.3.12.) 후	중앙당 + 시·도당 ※ 부칙으로 정당 후원회(중앙당+시도당)를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폐지하도록 규정
2006년	정당 후원회 제도 폐지(2006.3.13.) ※ 정치자금법 전부개정(2005.8.4.)시 부칙으로 정당 후원회 2006년 3월 13일 폐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2015.12.23.)	헌법불합치결정
2017년 정치자금법 개정(2017.6.30.) 이후 ~	중앙당

자료: 임채진, 정당 후원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116호(2016.1.22.) 내용 추가 및 자료 편집

21)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면서 해당 조항이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2017년 6월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한편, 김영배·장경태·임미애의원안의 경우에는 후원회 지정권자 외에도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도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후원인이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 후원금의 사용 대상을 중앙당 또는 지역당으로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²²⁾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의견²³⁾을 제안하면서 지역당(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되, 지역당의 후원회를 허용하진 않으면서²⁴⁾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결국, 후원회 지정권자로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것과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의 도입 여부는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성과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 유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2)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는 지역당 후원회 허용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해서 도입 가능

23)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0016, 2016.8.25.제안),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24)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역당 부활 논의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역당을 추가할 경우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및 유급사무직원 급여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후원회 설치보다는 후원금 지정 기부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7-2.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안 제11조·제12조)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역당을 추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²⁵⁾는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김영배 의원안	문정복의원안	윤상현·고동진 의원안	남인순·이해식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후원인 기부한도 (제11조)	규정없음	규정없음	500만원	200만원	
후원회 모금한도 (제12조)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현행법상 중앙당의 경우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500만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후원회 지정권자의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다음과 같음.

[현행법상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인 기부한도(§11)		후원회 모금한도(§12)
§6.1호	중앙당	500만원		50억원
§6.2호	국회의원			1억 5천만원
§6.2의2호	지방의원	시도의회	200만원	5천만원
		구시군의회	100만원	3천만원

25) 중앙당 등 일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를 모금할 수 있음(법 제13조).

§6.2의3호	대통령 후보자	1천만원		선거비용제한액 5%
§6.3호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6.4호	국회의원 후보자	500만원		1억 5천만원
§6.5호	당대표경선 후보자			
§6.6호	지방의원 후보자	시도의회	200만원	5천만원
		구시군의회	100만원	3천만원
§6.7호	지자체장 후보자	500만원		선거비용제한액 50%

후원인의 기부한도와 관련하여 윤상현·고동진·문정복의원안은 중앙당 후원인 기부한도인 연간 500만원을 지역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남인순·이해식·장경태의원안은 지역당이 중앙당에 비해 조직 규모나 구조상 하부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200만원을 기부한도로 정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 모금한도에 관하여는 김영배·남인순·이해식의원안은 5천만원, 장경태의원안은 1억원, 윤상현·고동진·문정복의원안은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개인 후원인의 기부한도와 조직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적정한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성과 함께 고액 기부를 통한 영향력 행사 우려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기 전에는 지구당에 대한 후원인 기부한도를 개인 2천만원(법인 5천만원)으로, 지구당 후원회의 모금한도를 3억원(선거 시 6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정당 후원회 후원인 기부한도 및 후원회 모금한도 연혁]

구 분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인 기부한도		후원회 모금한도 (선거시 2배 모금가능)
		개인	법인	
2004년 지구당 폐지 전 (1997~2004)	중앙당	1억원	2억원	300억원
	시·도지부			30억원
	지구당	2천만원	5천만원	3억원
2004년 법 개정 (2004.3.12.)	중앙당	1천만원		50억원
	시도당	500만원		5억원
2006년 (2006.3.13.)	정당 후원회 폐지			
2017년 중앙당 후원회 부활(현행)	중앙당	500만원		5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당 후원회 사무소의 물적 설비 및 유급 사무직원 인건비를 고려하여 후원회 모금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3.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배분(안 제28조)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의 10% 또는 15% 이상을 지역당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윤상현·남인순· 고동진의원안	이해식의원안
경상보조금 지역당 의무배분 (제28조)	시도당에 10% 이상	현 행 + 지역당에 <u>10%</u> 이상	현 행 + 지역당에 <u>15%</u> 이상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²⁶⁾에는 ① 경상보조금(법 제25조), ② 선거보조금(법 제25조), ③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법 제26조), ④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법 제26조의2) 및 ⑤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법 제26조의3)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액을 분기별로²⁷⁾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26)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헌법적 근거 아래 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어 현행 「정치자금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경상보조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정당 보조금 종류]

구 분	의 미	대상 선거
경상보조금 (제25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선거와 무관히 매년 지급
선거보조금 (제25조)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 지역구 시도 및 구시군의원선거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2)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제26조의3)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헌행법은 경상보조금의 경우 그 일부를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²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30% 이상,

28)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 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③·④ (생략)

시·도당에 10% 이상,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대상 및 비율]

대 상	비 율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
계	55% 이상

윤상현·남인순·고동진의원안은 정당의 법정조직으로 지역당을 추가하면서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이해식의원안은 경상보조금의 15% 이상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경상보조금의 고정적 배분을 통해 지역당의 재원마련을 후원금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경상보조금의 의무배분 대상 및 비율을 늘리는 것은(현행 4곳 55% 이상→지역당 추가시 5곳 65% 이상) 경상보조금 지출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이 일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함께 경상보조금 지출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상보조금의 의무배분은 1997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정책개발비에 2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최초이고, 2004년 동법 개정으로 경상보조금의 100%를 모두 용도별로 지정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하였다가, 2005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책연구소에 30% 이상, 시도당에 10% 이상,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2022년 동법 개정으로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 사용하도록 추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연혁]

구 분	의무배분 대상	의무배분 비율
1997년 법 개정(1997.11.14.) ※ 보조금 의무배분 최초도입	정책개발비	20% 이상
2004년 법 개정 (2004.3.12.)	중앙당	50%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여성정치발전	10%
2005년 법 개정 (2005.8.4.)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2022년 법 개정 ~ 현행 (2022.2.22.)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개정의견²⁹⁾을 제안하면서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하고, 현재 시·도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10% 이상)을 시·도당 대신 지역당(구·시·도군)에 배분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음.

29)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8. 지역당 도입 시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안·남인순의원안·임미애의원안·민형배의원안·문정복의원안)은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운동사무소 등 관련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후보자등록 등 (제49조제6항)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	현행 + 지역당(지구당) 창당승인취소
추천 취소 금지 (제50조제1항)		
등록무효 (제52조제1항)		
선거운동기구 (제61조제1항)	중앙당 및 시·도당	현행 + 지역당(지구당)
정당선거사무소 (제61조의2제1항)	구·시·군마다 1개소 설치 가능	지역당(지구당)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가능
기부행위 정의 (제112조제2항)	중앙당, 시·도당	현행 + 지역당(지구당)
당원모집 제한 (제144조제1항)	시·도당	현행 + 지역당(지구당)
부칙(시행일)	나머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민형배의원안	공포 후 3개월

지역당(지구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 법률안으로서 「정당법」 개정 시 정비가 필요한 내용으로, 현행 시·도당 수준과 유사하게 지역당 또한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정당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별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³⁰⁾의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부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형배의원안을 제외한 개정안들은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그 부칙 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1

개정안 조문대비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u>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u>이상의 발기인으로</u>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도당의 경우에 한정하고, 18세</u> ----- ----- -----.

③ (생 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①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당 및 지역당-----
-. -----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100명 이내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

3. 지역당: 1명 이내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은 1월 31일-----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별-----
-----, -----지역당-----

-----.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
시·도당 및 지역당-----

-----.

제47조(해산공고 등) -----

---시·도당 및 지역당-----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u>시·도당 및 지역당</u>----- -----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당</u>----- ----- ----- ② (현행과 같음)
---	---

<윤상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u>특별시·광역시·도</u>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u>(이하 “<u>시·도당</u>”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u>제17조(법정시·도당수)</u> 및 <u>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이하 “<u>시·도</u>”라 한다)-----<u>시·도당</u>(이하 “<u>시·도당</u>”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u>지역당</u>(이하 “<u>지역당</u>”이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u>제17조(법정시·도당수)</u>, <u>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u>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u> 및 <u>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6조(발기인)-----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당-----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 되어야 한다.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시·도당, 지역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무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
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신 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도당, 지역당

③-----시·도당, 지역당.

-시·도당, 지역당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

②-----시·도당 및 지역당-----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③-----시·도당 또는 지역당-----

-.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도당 또는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중앙당이 정하며,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및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역당수) 및 제18조의3(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남인순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으로-----.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u>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u>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u>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u> 10. <u>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
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하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
-----시·도당 또
는 지역당-----
-----.

제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및 지역당-----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큰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 · 도당 및 지역당

시 · 도당
및 지역당

[illegible]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시·도당 및 지역당-----

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
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
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
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
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
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
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
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
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
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
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
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
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 -----시
·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 지역당-----
-----.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
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정하고,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
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
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
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
(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
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
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
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③ 읍 · 면 · 동 별 지역당

-하고,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

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1. -----제18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
소) -----시·도당 및
지역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u>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당</u>----- ----- ----- ② (현행과 같음)
--	---

<장경태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u>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100명 이상의</u> , 지역당의 경우에는 <u>20명 이상의</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u>시·도당</u> 의 소재지와 명칭 8. <u>시·도당</u> 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 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당 및 지역당</u> ----- 8. <u>시·도당 및 지역당</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	제13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u>

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
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
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
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
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
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

·도당의 경우에 한정하고, 18세 미만인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
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
·도당 및 지역당-----
-. -----
-----시·도당 및 지
역당-----.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지역당-----
-----.

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

③ -----시·도당, 지역당-----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시·도당 또는 지역당-----

-----.

---시·도당 또는 지역당-----

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 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시·도당 또는 지역당-----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이나 지역당-----.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
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
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
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
·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
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
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
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
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100명 이내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
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

3. 지역당: 2명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
당 및 지역당-----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별로-----
-----지역당-----

-----.
-----.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
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 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 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 -----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 항) 또는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 사항</u>)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 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 소를 둔 자 ② (생략)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 2. (현행과 같음) 3. ----- ----- <u>지역당</u> ----- ----- ----- ② (현행과 같음)

<김윤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u>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 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 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란 <u>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 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u>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 제6조(발기인) ----- -----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당-----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생 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한다.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당 및 지역당-----

-----.

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신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당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등(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 당의 조직·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는다.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갖는다.
③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지역당-----
-----.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
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
지역당-----.

③ -----

-----.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은 해당 탈
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① 정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및 지역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다.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
받는 정당의 간부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정기보고) ①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연구소에는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
-----시·도당 및 지역당-----

-----.

제47조(해산공고 등) -----

-----시·도당 또는 지역당-----

-----.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 당대표경선등과-----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2. (현행과 같음) 3. ----- -----사무소를 둔 자 ② (현행과 같음)
--	---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이하 “지구당”이라 한다)-----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100명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제9조(시·도당 및 지구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구당-----

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u>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u> 8. <u>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당 및 지구당</u> ----- 8. <u>시·도당 및 지구당</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u>시·도당 및 지구당</u> 의 등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 및 지구당</u>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u>시·도당</u> 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4조(변경등록) ----- ----- <u>시·도당 및 지구당</u>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u>시·도당</u> 의 법정당원수) ① <u>시·도당</u> 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u>시·도당 및 지구당</u> 의 법정당원수) ① ----- ---- <u>하고, 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u> <u>을 가져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u>시·도당</u> 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도당 및 지구당</u> -----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

---. -----
-----시·도당 및
지구당-----
-----.

④ -----

-----시·도당 및 지구당-----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구당-----

-----지구당-----

-----.

③ -----지구당-----

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
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
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
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
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
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지구
당-----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당의 효
력이 발생한 경우 그 당원은 본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당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당”은 “시·도당”으로 본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구당-
-----.

② -----시·도당 및 지구당-----

-시·도당 및 지구당-----

-----시·도당 및 지구당-----

③·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구당-----시·도당 또는 지구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당, 지구당-----
-----.

③ -----해당 시·도당 또는 지구당-----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구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구당 또는 시·도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시·도당 및 지구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구당-----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구당-----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 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 으로 보관할 수 있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 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u>100인</u> 이내에서 각 시 ·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 ----- -----<u>150인</u>----- -----정하고, 지구당에는 2명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30조의2(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지구당
	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 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다.
<신설>	제30조의3(지구당의 읍·면·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 누구든지 지구당 하부조직 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 사무소 를 둘 수 없다.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 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 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 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정기보고) ① -----<u>시·도당</u> <u>및 지구당</u>----- ----- -----<u>시·도당 및 지구당</u>----- -----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 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② -----<u>시·도당 및 지구당</u>----- -----<u>시·도당</u> <u>및 지구당</u>-----

흡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략) <u>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u>시·도당의</u>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흡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흡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3. (생략) ② (생략) 제46조(<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1. -----<u>시·도당 및 지구당의</u>-----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u>시·도당 및 지구당</u> 창당승인의 취소) ----- <u>시·도당 및 지구당</u>-----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u> ② (생략)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 -----<u>시·도당 및 지구당</u>----- ----- 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3(<u>지구당의 읍·면·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u>)을 위반하여 <u>지구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 사무소를 둔 자</u> ② (현행과 같음)
--	---

<이해식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u>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u>중앙당</u>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u>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u> 으로-----

제4조(성립)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제6조(발기인) -----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당-----.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 및 지역당-----.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	---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제17조(법정시·도당수) -----2 이상-----.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500명 이상-----하고,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시·도당
또는 지역당-----.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④-----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및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당 및 지역당-----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③-----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 및 지역당-----

②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

③-----시·도당
및 지역당-----
-----.

④-----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생 략)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
--	--

③ · ④ (생략)

<신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 시 · 군, 읍 · 면 ·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 ·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자치구 · 시 · 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읍 · 면 · 동별-----

-----지역당-----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 ① ---

-----하고, 시 · 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 ·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u>100분의 2 이상</u>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 1.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 -----. <삭 제> 3. ----- ---1천분의 5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u>시·도당</u> 및 <u>지역당</u>----- -----. 제47조(해산공고 등)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2. (현행과 같음) 3. -----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	--

<고동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제3조(구성)----- -----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제6조(발기인) -----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③ (생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 ②·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당-----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시·도당 및 지역당-----
8. 시·도당 및 지역당-----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 및 지역당-----
-.

1.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시·도당 및 지역당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정당은 30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

제19조(합당)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④-----

-----시·도당 및 지역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당, 지역당-----

-----시·도당, 지역당-----

-----.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④ (생 략)

③-----시·도당, 지역당-----

---시·도당, 지역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 및 지역당-----

②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제25조(탈당) ① -----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

③-----시·도당 또는 지역당-----

-----.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도당에 각각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또는 지역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 및 지역당-----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u>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u>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u>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1. <u>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u>시·도당</u> <u>및 지역당</u>-----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하의 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 1. ----- -----시·도당 및 지역당-----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

<이언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u>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	제3조(구성)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이하 “지구당”이라 한다)</u>-----.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구당수) 및 제18조의3(지구당의 법정당원수)</u>----- -----. 제6조(발기인) ----- -----

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u>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생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100명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의</u>-----. 제9조(시·도당 및 지구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 및 지구당</u>-----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u>9. 지구당의 소재지와 명칭</u> <u>10. 지구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 -----<u>제13조(시·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u>-----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법정지구당수) ① <u>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u> <u>② 1개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제18조의3(지구당의 법정당원수) ① <u>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구당의</u>
---	---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당 및 지구당-----
---. -----
-----시·도당 및
지구당-----
-----.

④ -----

-----시·도당 및 지구당-----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시·도당, 지구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구당-----

-----시·도당, 지구당-----

-----.

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신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

③ -----시·도당, 지구당-----

-----시·도당, 지구당-----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구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구당-----

-----.

② -----시·도당 및 지구당-----

-----.

시·도당 또는 지구당-----

---시·도당 또는 지구당-----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u>시·도당</u>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u>시·도당</u>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u>시·도당</u>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u>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u>은 당원명부·탈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 ----- -----<u>시·도당 또는 지구당</u>-----<u>시·도당 또는 지구당</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시·도당, 지구당</u>-----. ③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u>시·도당 또는 지구당</u>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u>지구당 또는 시·도당</u>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 지구당</u>-----.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 및 지구당</u>-----
--	---

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중앙당이 정하며, 지구당에는 1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시·도당
및 지구당-----

-----시·도당 및 지구당-----

-----.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구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구당수) 및 제18조의3(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	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2(법정지구당수) 및 제18조의3(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구당 창당승인의 취소) ----- 시·도당 및 지구당----- ----- ----- -----
---	--

양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u> ② (생략)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 1. ----- -----<u>제13조(시·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u>-----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윤건영의원안1>

현행	개정안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 -----.

다. 1. · 2. (생 략) 3. <u>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u>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u> ② (현행과 같음)
---	--

<조은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당원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u>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u><신 설></u>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있다. 이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정한다. ④ 시·도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둔 자 ② (현행과 같음)
--	---

<민형배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제4조(성립) ① (생략)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	②-----제17조(법정시·

<u>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u>	<u>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u>100명 이상의</u>, 지역당의 경우에는 <u>50명 이상의</u>----- -----.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u>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 1. ~ 8. (현행과 같음) <u>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u> <u>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생략)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4조(변경등록)----- -----<u>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u>----- ----- ----- ----- -----. 1. ~ 5.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은 25개</u>

<신 설>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 되어야 한다.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④-----

-----시·도당 및 지역당-----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시·도당, 지역당-----

-----.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illegible]

④ (생략)

<신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당원명부) ① 시·도당 및 지역당-----.

②-----시·도당 및 지역당-----

----.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 지역당-----
-----.

③-----시·도

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u>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u>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u>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u>	<u>당 또는 지역당</u>----- ----- ----- ----. <u>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④-----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 ----- -----<u>총 15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며, 지역당의 유</u>
--	--

② ~ ④ (생략)

<신설>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급사무직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지역당 대표자의 선임) 지역당 대표자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당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제35조(정기보고) ①-----시·도당 및 지역당-----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및 지역당-----

-----.

제47조(해산공고 등)-----

-----시·도당 또는 지역당-----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1.-----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윤건영의원안2>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
제4조(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u>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u> 제18조(<u>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①<u>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u>시·도당의 관할구역</u>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u>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u> ② (생략)	제6조(발기인) ----- -----<u>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u>-----.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제18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①<u>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지역당은 50명 이상의</u>-----. ②----- -----<u>시·도당 및 지역당의 관할구역</u>-----.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	--

<이성윤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자치당(이하 “지역자치당”이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100명 이상의, 지역자치당의 경우에는 30명 -----.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조(시·도당 및 지역자치당의 창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시·도당 및 지역자치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시·도당의 경우에 한정하고, 18세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	제14조(변경등록) -----

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합당)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
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
·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제13조(시·도당 및 지
역자치당의 등록신청사항)-----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시·도당 및 지역자치
당-----.

④ _____

_____ 시 · 도당 및 지역자치당
_____.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100명 이내

2. 시·도당 :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

3. 지역자치당 : 2명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략) ③ 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u>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u>시·도당</u>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	-----<u>시·도당 및 지역자치당</u>은 1월 31일-----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읍·면·동별</u>----- ----- -----<u>지역자치당</u>----- ----- -----. 제46조(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창당승인의 취소) -----<u>시·도당 및 지역자치당</u>----- ----- ----- ----- ----- ----- -----. 제47조(해산공고 등) ----- ----- ----- -----<u>시·도당 및 지역자치당</u>-----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 ----- -----. 1. ----- -----<u>시·도당 및 지역자치당</u>----- 2. (현행과 같음) 3. ----- -----<u>지역자치당</u>----- ----- ----- ② (현행과 같음)
--	---

<김영배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당비) ① ----- -----있으며,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 원·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 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한다) 및 지역당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생략) <신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 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 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 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 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u>
3. ~ 6. (생략) ② ~ ④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 ----- ----- -----.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u>중앙당후원회</u>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앙당후원회</u>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앙당후원회</u>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1. ----- -----<u>중앙당후원회</u> <u>· 지역당후원회</u>----- 2. ----- -----<u>중앙당후원회</u> <u>· 지역당후원회</u>----- ----- 3. ----- -----<u>중앙당후원회</u> <u>· 지역당후원회</u>-----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
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
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
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
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
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
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
한 사항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중앙당(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
음)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
도당 및 지역당-----

- ③ -----시·도당
및 지역당-----

<u>거사무소</u>는 나목에 의한다. 2. ~ 5. (생략) ② ~ ⑥ (생략)	----- -----<u>시·도당, 지역당 및</u> <u>정당선거사무소</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윤상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마. (생략)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u>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u>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u> 2. ~ 8. (생략) 제4조(당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 ----- ----- ----- ----- 사. -----<u>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당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u>

④ (생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 바.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③ ~ ⑥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	<u>용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u> 3.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5천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
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지역당

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

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지방의회의원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
·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
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
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등록된 중앙당 · 지역당

② -----중앙당후원
회·지역당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
회-----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② _____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1. ~ 4. (현행과 같음)

5. -----

-----시·도당 및 지역당-----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

-----.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 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

1. -----

가. -----

-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생략)

2. (생략)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략)

4.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 5. (생략)

-----시·도당 및 지역당-----

나. -----

-----시·도당 및 지역당-----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지역당준비위원회-----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u>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u>).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 <u>중앙당·지역당</u>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남인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u>1의2. 지역당</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② ----- ----- ----- -----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 원 가. ~ 나.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 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 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 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 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 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 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 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리하지 아니하 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 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 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 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지역당후원회</u>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 례) ① ----- ----- -----
--	---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
-----.

1.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3.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1. ~ 4. (현행과 같음)

5. -----

-----보조금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③ -----시·도
당 및 지역당-----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역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1. _____

가. _____

시·도당 및 지역당-----

4. _____

$$\text{---} \lambda \text{---}$$

도당 및 지역당-----

4. _____

<u>거사무소</u>는 나목에 의한다.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 -----<u>시·도당, 지역당 및</u> <u>정당선거사무소</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장경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u>있다</u>. ② ~ ④ (생 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u>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2. ~ 7. (생 략)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제4조(당비) ① ----- -----<u>있으며, 지역당은 소</u> <u>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u> <u>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u> <u>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1. <u>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u>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u> <u>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u> <u>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u> <u>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u> <u>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

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나.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⑥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역당후원회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후원회는 1억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 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

-----.

1.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3.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보고) ① ----- ----- ----- -----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1.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가. -----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시·도당 및 지역당-----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나. -----
에 참여한 연도	

⑥ (생 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구당-----

③ -----시·도당
및 지구당-----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

1. -----

가. -----

-----시·도당 및
지구당-----

나. -----

1. (생략)

<신설>

2. ~ 7.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생략)

<신설>

나. ~ 바. (생략)

③ ~ ⑥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생략)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

-----.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 5천만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지역구에 후보
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
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

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
으로 등록하거나 후원을 둔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
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
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은 대의기관이
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
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
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
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지방의회의
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지
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을 둔 대통
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
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
후보자·지방의회의원후보자·지방자치
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
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
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
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
원회·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
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
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
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
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④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중앙당창당준비위원
회 또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등록된
중앙당·지역당-----

②-----중앙당후원회·
지역당후원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략)

②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

처분 등) ①-----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

2. (현행과 같음)

②-----중앙당 및 지역당은 제외한다-----

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
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
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또는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으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

1.~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1. ~ 4. (현행과 같음)

5. -----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u>보조금</u>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 ----- -----보조금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 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당(후원회를 둔 <u>중앙당</u>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 ----- ----- ----- ----- ----- 1. -----<u>중앙당</u>창당준비위 <u>원회</u>·<u>지역당</u>창당준비위원회----- -----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②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u>시·도당</u>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u>시·도당</u>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u>시</u> <u>·도당</u> 및 <u>지역당</u>----- ----- ③-----<u>시·도당</u> 및 <u>지역당</u>----- -----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
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
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
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
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
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
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
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
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
는 나목에 의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1. -----

가. -----

-----시·도당 및 지
역당-----

나. -----

-----시·도당 및
지역당-----

다. -----

-----시·도당 및 지역당-----
-----.

2. (생 략) 3. <u>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를 포함한다)</u> 및 국회의원후원회 ·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 나. (생 략) 4. · 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후원회를 둔 <u>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u>가 소멸한 때 3. ~ 5. (생 략) 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u>중앙당</u>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7. (생 략) ⑤ · ⑥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를 포함한다) ·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 가. ·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u> 또는 <u>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중앙당 · 지역당</u>----- ----- -----. 6. · 7.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이해식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당</u>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나. (생략) <u><신설></u> 4.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지역당후원회</u>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

1.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3. -----

-----중앙당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
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대통령
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
회를 둔 경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
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
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지
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
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
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
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략)

② ~ ⑦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
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
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1. ----- 중앙당(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에, 100분의 15 이상은

지역당에-----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1. ~ 4. (현행과 같음)

5. -----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
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
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
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
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
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
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
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

도당 및 지역당-----

③ -----시·도
당 및 지역당-----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1. -----

가. -----

시·도당 및 지역당-----

나. -----

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 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 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 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시· 도당 및 지역당----- - 다. ----- ----- -- ----- -----시·도당, 지역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민형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u> <u>시·도당이</u> 물품·용역을 구입·계약 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 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u> <u>도당 및 지역당</u>----- ----- ----- ③ -----<u>시·도당</u> <u>및 지역당</u>-----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
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
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
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
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
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
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거
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 5.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

1. -----

가. -----

-----시·도당
및 지역당-----

나. -----

-----시·도당
및 지역당-----

다. -----

-----시·도당 및 지역당-----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문정복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 7. (생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자치당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자치당후원회는 1억5천만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생략)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

-----.

1. -----

-- 지역자치당후원회

2. (현행과 같음)

3. -----

- 지역자치당후원회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별) ①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자치당-----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
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
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
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
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략)

② ~ ⑦ (생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
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
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
도당 및 지역자치당-----

③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
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
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
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 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 5. (생략)

② ~ ⑥ (생략)

1. _____

가. _____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illegible]

다. -----

-----시·도당, 지역자치
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참고3

개정안 조문대비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안>

현행	개정안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u>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u>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 당해</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各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 <u>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各호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 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
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
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
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
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
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 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
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
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
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
·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
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
한다) 또는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
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
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
다)-----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시·도당 또는 지역당-----

거.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략) 3. ~ 6. (생략) ③ ~ ⑤ (생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u>-----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 -----<u>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 ----- -----<u>시·도당이나 지역당</u>----- ----- -----.
--	--

<남인순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補者登録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에 候補者로 登録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録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 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⑮ (생략)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과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登録후에는 登録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録期間중 政黨推薦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 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録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録된 者の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5. (생략)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録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

-----.

시·도 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
승인취소-----.

⑦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과 변경의 금지)

① -----

-----.

-----시·도 당
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외의-----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당창당승인취소</u>가 있는 때 7.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u>중앙당 및 시·도당</u>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 당해</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各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 ----- --<u>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u>-----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u>-----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u>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

가. (생 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u>-----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 ----- -----<u>대표자</u> <u>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

<임미애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 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⑮ (생략)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의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の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5. (생략)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

⑥

— 시 · 도 당 또는 지구당 창당승인취소 —

⑦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시·도당 또
는 지구당 창당승인취소 외의-----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録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録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당창당승인취소</u>가 있는 때	----- ----- ----- ----- ---<u>시·도당 또는 지구당 창당승인취소</u>-----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u>중앙당 및 시·도당</u>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u>중앙당 및 시·도당, 지구당</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u>선거에 있어서 당해</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u>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구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u>-----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략)

같음)

②-----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회의를 말한다),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지구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시·도당 또는 지구당-----

거.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u>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2. -----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구당</u>-----<u>시·도당 및 지구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구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u>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구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	--

<민형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현행)

략)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u> 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⑮ (생략)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u>시·도</u> 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과 같음) ⑥ ----- ----- ----- ----- ----- -----, ----- -----<u>시·도</u>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 -----. ⑦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 ----- ----- ----- ----- -----, ----- ----- -----<u>시·도</u>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외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	--

1. ~ 5. (생략)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録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録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당창당승인취소</u>가 있는 때 7.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u>중앙당 및 시·도당</u>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u>중앙당 또는 시·도당</u>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各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⑦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u>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u>-----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u>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략)

2. 의례적 행위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시·도
당이나 지역당의 대표자-----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시·도당 또는 지역당-----

거. (현행과 같음)

2. -----

가. (생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략) 3. ~ 6. (생략) ③ ~ ⑤ (생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u>-----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간부를 포함한다</u>----- -----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 ----- -----.
--	---

<문정복의원안>

현행	개정안
----	-----

1. ~ 5. (생략)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録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録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 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자치당창당승인취소-----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자치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

1. ~ 3. (생략)

② ~ ⑦ (생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 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지역자치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사.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시·도당 또는 지역자치당-----

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 또는 시·도당</u>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舉期間中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거.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u>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자치당</u>----- ---(<u>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자치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자치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u>)----- ----- ----- -----<u>대표자</u>를 포함하며, <u>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자치당 대표자를 포함한다</u>----- -----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u>시·도당이나 지역자치당</u>----- ----- -----.
---	--